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60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6051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13 선고 2020가소7600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9. 30.

판결선고 2021. 11. 25.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10. 13. 선고 2020가소760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20. 2. 17. 09: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직원으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1장당 950원에 대량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7:22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마스크 대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한 성명불상의 제3자가 아니라 계좌 명의인인 피고가 실질적으로 위
20,000,000원의 이득을 얻었다거나 그 예금채권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김선영, 판사 김유성